

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·관리조례안

□ 제안이유

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촌지도자회·생활개선회·농업경영인회·4-H회 등 농업인의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정함.(안 제3조제2항)
- 기금의 재원은 파주시 출연금과 기존에 조성된 4-H후원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.(안 제4조)
-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의 육성사업, 해외연수사업, 연찬사업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.
(안 제5조제1항)
-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3조)
-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함.(안 제8조)

□ 검토보고

- 동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코자하는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에 근거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적법 타당하고
- 그 동안 조례의 근거없이 운용되어진 4-H후원기금 등을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게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행정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런 일로 사료됨.
- 조례안 내용에서 기금의 조성시 가장 중요시되는 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면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파주시에서 운용하는 타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를 비교해 보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만이 목표액(10억원)을 설정했을 뿐 여타 조례 또한 목표액과 조성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- 이는 조례안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